

# 대법 위법 판결... '5·18 폼페이 현수막 금지' 조례안 운명은

### “조례로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일괄 규제 못해...상위법 위배”

### 광주시 “판결전 문제 조항 빼고 조례 재개정...적용 대상 아냐”

최근 대법원은 선거절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광주시 등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효력을 상실한 기존 조례를 지난달 개정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5·18 비방·폄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치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은 대법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라서 5·18 비방·폄훼 행위 금지 조항이 유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의결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주시가 내놓은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계시에 설치할 것, 행정동별 4개 이하의 정당현수막만 설치할 것, 5·18 비방·폄훼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특정인을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넣지 말 것 등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상 2m 이하로 설치된 광고물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된 광고물을 ‘금지 광고물’로 정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현

수막에 대한 설치 요건을 명시하면서 옥외광고물법과 시 조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은 “정당활동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이며, 조례로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광주시의 정당현수막 규제는 동력을 잃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계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할 때도 ‘현수막 본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

상, 아랫부분 끈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른 규제는 없더라도 5·18 비방·폄훼 금지 관련 조항만은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1일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와 개수 제한 등 내용을 대거 삭제했다. 대신 조례에 ‘5·18 비방·폄훼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특정인을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넣지 말 것’ 두 가지 조항은 남겨 두었다.

이 조항은 과거 일부 정당이 5·18 왜곡·폄훼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포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 일대에는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입단하라’는 등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논란이 됐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조례안에만 해당되므로, 지난달 한 번 더 개정된 조례안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5·18 관련 조항도 결국 지난해 9월 시행한 조례안에서 신설된 내용이고, 전국에 걸쳐 규율을 통일시키려는 상위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대법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최근 개정된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정당현수막을 규제를 이어가겠다”면서도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가 지적을 해 올 경우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시 북구, 무등산 자락 한새봉~삼각산 등산로 연결 ‘시민의 숲음길 2구간’ 개통

광주시 북구가 무등산 자락인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시민의 숲음길 2구간’ 공사를 마치고 시민에게 개방한다.

광주 북구는 5일 오전 10시 명상의 집 잔디광장(북구 우치로 599)에서 시민의 숲음길 2구간 개통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시민의 숲음길은 무등산 자락인 군왕봉과 삼각산, 한새봉, 매곡산, 운암산, 영산강까지 4개 구간으로 나뉘 도로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체 23.5km 규모에 달한다.

북구는 2012년 1구간(문흥동-삼각산-국립5·18민주묘지) 조성 이래 지난해 9월 2구간을 착공했다.

2구간은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길로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됐다. 길이 61.3m, 폭 3m 규모의 숲길 연결다리(일곡동 산 56)가 설치됐으며 5.5km 등산로도 조성됐다. 2구간 조성에 따라 한새봉에서 삼각산 정상까지 주민들이 한번에 걸을 수 있게 됐다. 점에서 북구는 도심 속 산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는 한새봉과 매곡산, 운암산,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3구간 사업은 2026년까지, 군왕봉과 삼각산을 잇는 4구간은 내년 기본설계를 시작해 2028년까지 국비를 확보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생태 친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남은 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명품 숲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여름밤 산사서 즐기는 모기장 영화음악회. 지난 3일 구례군 화엄사 화엄원 마당에서 열린 ‘2024 제 4회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 관람객들이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CT촬영 부작용 고지 안한 의사 배상 책임

### 급성 쇼크 사망 유족 일부 승소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조영제(병변 관찰을 위한 의약품)를 투여할 때 환자에게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병원에서부터 CT 촬영 전 조영제를 투여받았다가 급성 쇼크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유족에게 합산 1499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의사들에게 명령했다.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씨는 2020년

5월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CT 검사를 받은 뒤 쇼크 증세를 보였으며 1개월여 뒤 사망했다.

의료감정 결과 A씨의 사망은 조영제로 인한 쇼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약간의 윤열감 등 원론적인 부작용만 설명하고 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주의의무 소홀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 노인...고령화에 증가

### 여성 노인 9명중 1명 절대 빈곤층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은 9명 중 1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빈곤층 비율이 높았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는 245만8608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37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1.3%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973만411명)의 10.4%(101만5379명)가 수급자로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절대적 빈곤층에 놓여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여성 수급자는 137만1164명으로 남성(108만7444명)보다 많았다. 수급자 비율도 여성은 5.3%로 남성(4.3%)보다 컸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가 47.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여성 노인(543만3444명) 중 11.9%(64만5693명)가 수급자로, 9명 중 1명 이상이 절대적 빈곤층이었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 2023년 41.3%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은 10년 전인 2013년(29.9%)보다 무려 11.4%포인트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